

#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검 토  
보고서

이 규칙안은 2024년 3월 22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,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.

## 1. 개정이유

-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개편에 따라 전결대상 사무를 정비하여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양평군의회의회장 및 의회사무과장 결재권의 배분 내용을 정비(안 제3조)
- 나.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정비(안 별표)

## 3. 검토의견

- 이 규칙안은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 전결 처리사항과 사무 집행의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관계법령 및 법규: 해당없음

#### 5. 기타 참고사항

- 예산 수반사항: 해당없음
  - 「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생략
- 입법예고결과
  - 입법예고: 2024. 3. 22.~2024. 3. 27.(5일간) / 제출의견: 없음
- 부서협의: 의견 없음